

형식승인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(제60조제1항 관련)

위반사항	근거법령	행정처분기준		
		1차	2차	3차
1.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	법 제110조 제9항제1호	형식승인 취소		
2. 검정을 받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	법 제110조 제9항제2호	업무정지 6개월	형식승인 취소	
3.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110조 제9항 제2호 의2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형식승인 취소
4. 기준에 미달하는 형식승인대 상설비를 판매한 때	법 제110조 제9항제3호	업무정지 6개월	형식승인 취소	
5.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때	법 제110조 제9항제4호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형식승인 취소